

1 개념 및 필요성

-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 (홈페이지 등)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
 -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
 -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노력을 유도

2 제도 도입 추진경과

- '94년부터 「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」 운영
 - 자치단체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, 매회계년도 마다 1회 이상 세입·세출예산의 집행상황,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 공개 (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)
 - 자치단체별로 공개범위, 공개방법, 공개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등이 어렵다는 한계
- '06년부터 「지방재정 공시제도」 도입
 - 재정공시 대상, 공시방법, 시기,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
 - 기존 「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」의 한계를 극복하고, 주민에 대한 재정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

1 공시주체 : 모든 지방자치단체장

2 공시의 구분 :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

- 공통공시 :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 공시
- sal림규모, 재정여건, 지방채무, 채권, 행정운영경비, 복지·민간지원경비, 기금 및 지방공기업, 재정성과, 감사·평가,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등 10개 분야 46개 세부항목

●● 공통공시의 범위

재정운영 결과(지방재정법 제60조)

- 세출예산의 집행상황
-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
- 지방채·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- 지방채권 현황
- 기금운용 현황 -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
-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
- 제59조에 따른 통합재정정보

→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(시행령 제68조)

- 재정분석·진단 결과
- 감사원 등 외부 감사기관(상급 지자체 포함)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
-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 - ▶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·재정력지수
 - ▶ 보증채무 현황
 - ▶ 지방공기업 부채 및 일반현황
 - ▶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
 - ▶ 기관운영 기본경비 집행현황
 - ▶ 청사관리운영
 - ▶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
 - ▶ 업무추진비 집행현황
 - ▶ 국외여비 집행현황
 - ▶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
 - ▶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
 - ▶ 사회복지비 집행현황
 - ▶ 지방세 지출예산 현황
 - ▶ 맞춤형복지비 운영현황
 - ▶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
 - ▶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
 - ▶ 연말지출 비율
 - ▶ 지방세·세외수입 체납현황
 - ▶ 성인지예산·주민참여예산현황
 - ▶ 원가회계정보(·축제, 청사신축)
 - ▶ 지방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
 - ▶ 기금성과분석결과 ▶ 수의계약현황 ▶ 출자출연금 집행현황
 - ▶ 투융자심사사업·지방채사업·민간투자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

■ 특수공시 : 당해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징 등을 감안한 특수한 재정 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

○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재정 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

●● 특수공시의 대상

특수한 재정운용 상황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

- 건수 대비 2~3배수 정도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

→ 대상사업 선정기준

- 전년도 업무계획에 의거 추진중이거나 완료된 사업

※ 단체장 치적홍보를 위한 사업, 계획중인 사업은 배제

- 관심도 제고, 공시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체 주민에게 수혜가 있는 사업

- 타 자치단체에서는 추진하지 않는 고유사업으로 파급효과가 큰 사업

(특수공시사항 예시 참조)

※ 공시건수, 후보건수 선정 등은 탄력적으로 운영

3 공시의 시기 :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

■ 정기공시 : 매년 8월에 정례적으로 실시

○ '15년부터는 매년 2월, 8월에 걸쳐 총 2회 실시

■ 수시공시 : 재정공시가 필요한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 실시

○ 세입결손으로 인한 실행예산 운영 또는 다음년도 수입을 앞당겨 충당·사용한 경우 등